

제342회 임시회
2015.9.11. (금)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11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8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2일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가.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근거 신설(안 제22조제2항)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시 도의회 동의 절차 신설(안 제22조제3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적용 대상 개정(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연임제한 개정(안 제13조제4항) 및 이해충돌방지, 위촉해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1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2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를 통하여 에너지”를 “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시설과”를 “그 밖의 시설과”로, “필한”을 “마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건축법령에 의거”를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를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설치면제검토서를 붙였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확인서의 첨부여부”를 “확인서를 붙였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확인서가 첨부되지”를 “확인서를 붙이지”로, “첨부할”을 “붙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검토서의 첨부”를 “검토서를 붙였는지”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호선” 을 “호선(互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을 “한 차례만 연임할” 로, “잔여기간” 을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 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 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용”을 “관용(官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요되는” 을 “드는”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u>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 ----- ----- ----- ----- -----, <u>에너지</u> ----- ----- ----- ----- ----- ----- -----. |
| 제2조(기본원칙) (생 략) 1. ~ 2. (생 략)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u>당해</u>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생 략) | 제2조(기본원칙)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u>해당</u> ----- ----- ----- 4. (현행과 같음) |
| 제3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3. “연료” 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u>기타</u>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생 략) 5. “신·재생에너지” 라 함은 |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u>그</u> <u>밖에</u> ----- -----. 4. (현행과 같음) 5. “신·재생에너지” 란 「신 |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양에너지 · 풍력 · 바이오에너지 · 소수력 · 해양에너지 · 지열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 ·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p> <p>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u>의거</u>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 기자재를 말한다.</p> <p>7. “사업자” 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 장비 및 <u>기타시설과</u>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u>필한</u> 자를 말한다.</p> <p>8. "환경표지 인증제품" 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p> | <p>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p> <p>6. ----- ----- -----<u>따라</u> ----- ----- ----- ----- -----. 7. ----- ----- ---- <u>그 밖의 시설과</u> ----- ----- ----- ---- <u>마친</u>-----.</p> <p>8. -----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u>17</u>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p> <p>9. ~ 16. (생략)</p> <p>1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u>동법 시행령</u>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p> <p>18.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u>동법 시행령</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p> <p>19.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u>건축법령</u>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20. ~ 24. (생략)</p> <p>제6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p> | <p>-----</p> <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p> <p>9. ~ 16. (현행과 같음)</p> <p>17. -----</p> <p>-----</p> <p>-----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p> <p>18. -----</p> <p>-----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p> <p>19. -----</p> <p>「건축법」에 따른 -----</p> <p>-----</p> <p>-----.</p> <p>20. ~ 24. (현행과 같음)</p> <p>제6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p> <p>-----</p> <p>신축·중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p> |

| 현 행 | 개 정 안 |
|--|--|
| <p>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u>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u>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담당공무원은 <u>제1항의 규정</u>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u>확인서의 첨부여부</u>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검토서·설치면제 검토서 및 <u>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u>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u>첨부할</u> 수 있도록 센터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u>건축물</u> ----- ----- <u>설치면제검토서를 붙였는지 여부</u>-----.</p> <p>② ----- <u>제1항</u>----- ----- ----- <u>확인서를 붙였는지 여부</u>----- -----.</p> <p>③ ----- <u>제2항에 따른</u> ----- ----- <u>확인서를 붙이지</u>----- ----- ---<u>붙일</u> ----- ----- ---</p> |
| <p>제8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 <u>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 <p>제8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 <u>필요한 예산</u>----- --- <u>검토서를 붙였는지</u>----- ----- <u>마련</u>-----.</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생 략)</p> <p>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 <p>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1. ~ 6. (생 략)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 <u>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u> 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 1. ~ 6. (현행과 같음)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 <u>1항에 따라 -----</u> ----- ----- ----- |
| 8. ~ 9. (생 략) 10. <u>기타</u>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 9. (현행과 같음) 10. <u>그 밖에 -----</u>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 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④ ----- ----- ----- ----- ----- ----- ----- <u>따라야 -----.</u> |
| ⑤ 도지사는 <u>제2항의 규정에 의</u> 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 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 <u>제2항에 따른</u> ----- ----- -----. |
| ⑥ ~ ⑦ (생 략)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획) ① ~ ② (생 략)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도지사는 <u>제2항의 규정에 의</u> | ③ ----- <u>제2항에 따른 -----</u> |

| 현 행 | 개 정 안 |
|--|--|
| <p>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p> <p>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한다.</p> <p>③ (생 략)</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u>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p> <p>1. ~ 4. (생 략)</p> <p>5. <u>기타</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부의하는</u> 사항</p> | <p>-----</p> <p>-----.</p> <p>제1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호선(互選)</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u>한 차례만 연임할</u> -----</p> <p>----- <u>남은 기간</u>-----.</p> <p>제14조(기능)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 <u>회의에 부치는</u>---</p> |
|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u>위원장</u>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p> |
| <p>③ (생 략)</p> <p><u><신 설></u></p> |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u>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u></p> <p><u>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u> <u>· 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u> <u>·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u>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u></p> <p><u>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u>제1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
| <신 설> |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0조(건물 부문) ① 도지사는 <u>건축법</u>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p> | <p><u>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 <u>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u> <u>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 <u>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u> <u>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u> <p>제20조(건물 부문) ① ----- <u>「건축법」-----</u>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21조(공공 부문) ① (생략)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 부문) ① (현행과 같음)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 2.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 ----- ----- ---- |
|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 3. ----- ----- ----- 따라 ----- -----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관용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 4. 관용(官用)----- ----- ----- |

| 현 행 | 개 정 안 |
|--|---|
| 5. ~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u>의거</u>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 ----- ----- <u>따라</u> ----- -----. <u>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u> |
| <u><신 설></u> | <u>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 제2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u>소요되는</u>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① ----- ----- ----- <u>드는</u> ----- ----- <u>범위에서</u> ----- -----.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 ~ ③ (생 략) 제24조(에너지 상) 도지사는 에너 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 저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 에 <u>대하여는</u>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 <p>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에너지 상) ----- ----- ----- ----- ----- --- <u>대해서는</u> ----- -----.</p> <p>1. ~ 2.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신 ·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촉진하고 신 ·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6조(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